

수시통계품질진단 절차



통계청
Statistics Korea

< 목 차 >

I. 수시통계품질진단 개요	1
1. 실시 목적	1
2. 법적 근거	1
3. 연 혁	2
II. 수시통계품질진단 절차	4
1. 국가통계 모니터링 실시	4
2.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 선정	6
3. 진단주체 결정	7
4. 작성기관에 실시계획 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	8
5. 진단 실시	9
6.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	10
[붙임]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선정 평가표	11

I

수시통계품질진단 개요

1 실시 목적

- 시기적으로 정기통계품질진단이나 자체통계품질진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개선 필요
국가통계에 대해 신속히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

2 법적 근거

- 국가통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통계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법 10조에
의거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

• 법적 근거 •

통계법 제10조(수시통계품질진단)

- ① 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
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(이하 "수시통계품질진단"이
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
사유·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9조제3항 및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.
- ④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통계법 시행령 제13조(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)

통계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(이하 "수시통계품질진단"이라 한다)을 실시하려면
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
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대상
2.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
3.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시기와 방법
4. 그 밖에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

3 연 혁

- 수시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3조를 법적근거로 하며, 2010년부터 국가통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

< 연도별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내역 >

연도	통계명 (작성기관)	진단 방법	진단사유	주요 개선사항
2010	지적통계 (국토교통부)	외부	언론에서 ‘국토면적, 섬 숫자 면적 자료 차이 발생’ 기사화 관련 점검 필요성 제기	- 미복구지역, 내수면 등의 면적 포함여부 등 국토개념 명확화 - 유인·무인도서(섬) 분류코드 체계 및 국가 도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
	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(여성가족부)	외부	다문화가족의 정책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품질 검증 필요성 제기	- 전수조사를 표본조사로 전환 및 원자료를 보완하여 제공 -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의 체계화 및 문서화
	주요기업의 설비투자계획조사 (한국정책금융공사)	내부	경제분야 통계작성실태 점검 결과 품질개선 필요성 제기	- 제9차 산업분류 기준 적용 - 최신의 모집단 확보를 통해 조사대상의 명확성 제고 - 조사표 회수율 제고 노력
2011	가족실태조사 (여성가족부)	내부	언론에서 ‘건보 보장률 63% 통계 알고보니 주먹구구’ 등 기사화 관련 점검 필요성 제기	- 조사문항의 명확성 확보 및 정책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사시기 조정
2011	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(국민건강보험공단)	외부	언론에서 ‘국민 75% 친조 부모는 우리가족 아니다’ 기사화 관련 점검 필요성 제기	- 표본설계와 보장률 추정산식* 개선 - 자료처리의 일관성 확보 * 보장률 추정산식에 비급여본인부담금을 추정 하여 활용하는 방안 제시
2012	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(관세청)	내부 · 외부 공동	언론에서 ‘12월 무역흑자 40억 달러라더니 실제론 23억 달러 기막힌 통계오류’ 기사화 관련 점검 필요성 제기	- 출항일 기준으로 통계 작성 * 과거 자료를 출항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기반 마련 후 출항일 기준 통계 작성 - 분기별 일정 오류점수 이상인 신고인(관세사) 대상 교육 실시
2017	창업기업실태조사 (중소벤처기업부)	내부	정기통계품질진단 미 실시 통계 기획모니터링을 통해 품질 개선 필요성 제기	- 표본설계(층화방법, 공표범위 등) 개선 - 원표본 유지율 제고 - 내용검토 지침 마련 및 시계열 분석 철저 - 조사 및 공표시기 조정하여 시의성 개선
2018	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(여성가족부)	내부 · 외부 공동	국민의 관심 및 정책활용도 높은 통계 기획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개선 필요성 제기	- 행정자료 활용 모집단 구축 및 갱신주기 단축 - 표본설계(표본추출방법, 층화기준 등) 개선 - 조사방법 및 조사표 개선 - 전수층 응답률 및 원표본 유지율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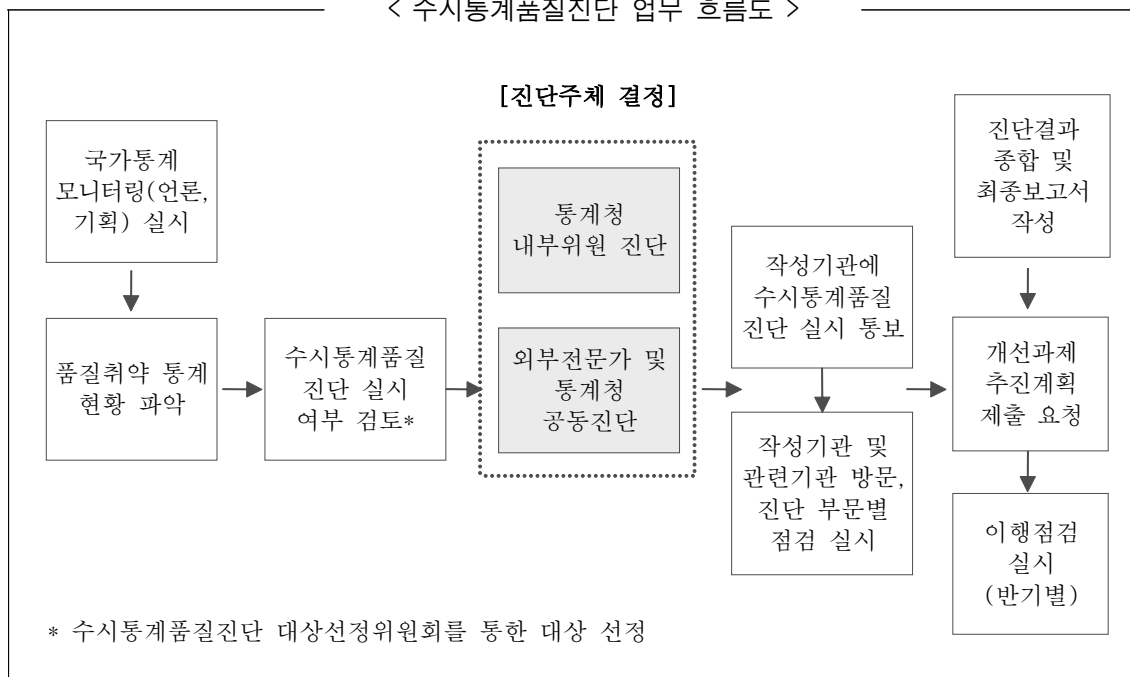
< 연도별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내역 >

연도	통계명 (작성기관)	진단 방법	진단사유	주요 개선사항
2018	뿌리산업실태조사 (산업통상자원부)	내부 · 외부 공동	'15년 이후 승인통계 중 신산업 분야 통계 기획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개선 필요성 제기	- 행정자료 활용 모집단 보완 및 구축 - 표본설계(표본규모, 추정식 등) 개선 - 조사항목 및 조사표 개선 - 상대표준오차 산출 및 공표범위 검토
	신재생에너지설비 연료산업조사 (한국에너지공단)	내부 · 외부 공동	자체통계품질진단 저평가 통계 기획모니터링을 통해 품질 개선 필요성 제기	-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모집단 보완 - 모집단 규모를 고려한 공표범위 개선 - 무응답 관리 강화 및 처리방법 개선
2019	농업법인조사 (농림축산식품부)	내부 · 외부 공동	언론에서 '농림축산식품부 작성 통계 간 농업법인수 차이 발생' 기사화 관련 점검 필요성 제기	- 농업법인실태조사와 농업법인 명부 통합 구축 -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모집단 구축 및 보완 - 표본조사로 전환 및 결과표 개선 - 공표자료 내검 및 자료분석 강화
	중소기업금융 실태조사 (IBK기업은행)	내부 · 외부 공동	자체통계품질진단 저평가 통계 기획모니터링을 통해 품질 개선 필요성 제기	-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조사모집단 구축 - 표본설계(층화기준, 추정식 등) 개선 - 응답률 제고 및 조사과정자료 관리
2020	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(중소벤처기업부)	내부 · 외부 공동	언론에서 해당 조사 매출액 관련 '중기부 통계의 함정' 기사화로 점검 필요성 제기	-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모집단 보완 - 표본설계(층화기준, 표본배분 등) 개선 - 표본대체 지침 준수 및 조사과정자료 관리 - 상대표준오차 제고 및 공표범위 검토
	소프트웨어기술자 임금실태조사 (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)	내부 · 외부 공동	정기통계품질진단 통계설계 부문 취약 통계 기획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개선 필요성 제기	- 협회 보유자료 등 활용하여 모집단 최신화 - 표본설계(층화기준, 표본배분 등) 개선 - 표본대체 지침 마련 및 준수 -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평균임금 추정
2021	설비투자계획조사 (한국산업은행)	내부	언론에서 해당 조사와 통계청 서비스업생산지수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난다는 기사를 보도함에 따라 점검 필요성 제기	- 통계작성방법 지수화 전환 검토 - 표본추출틀 변경 및 표본설계 개선 - 조사항목 변경 및 분류체계 개선 - 무응답 처리방법 개선(공시자료 활용)
	제조업경기조사 (산업통상자원부)	내부 · 외부 공동	자체통계품질진단 통계설계 부문 취약 통계에 대한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개선 필요성 제기	- 지역별 BSI 작성 변경승인 실시 - 표본규모 확대 및 표본설계 개선 - 작성지표 용어 변경 및 삭제 - 표본대체 지침 변경 및 표본관리 강화
2022	콘텐츠산업조사 (문화체육관광부)	내부 · 외부 공동	다년간 변경승인이 이루어 지지 않은 통계에 대한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 필요성 제기	- 다수업종 사업체 지표 작성방법 개선 - 조사모집단 구축방법 및 전수층 기준 개선 - 표본관리 강화 및 표본대체 지침 준수 - 표본가중치 관리 강화 - 무응답 관리 강화 및 처리방법 개선 - 지역별 지표 공표범위 축소

Ⅱ

수시통계품질진단 절차

< 수시통계품질진단 업무 흐름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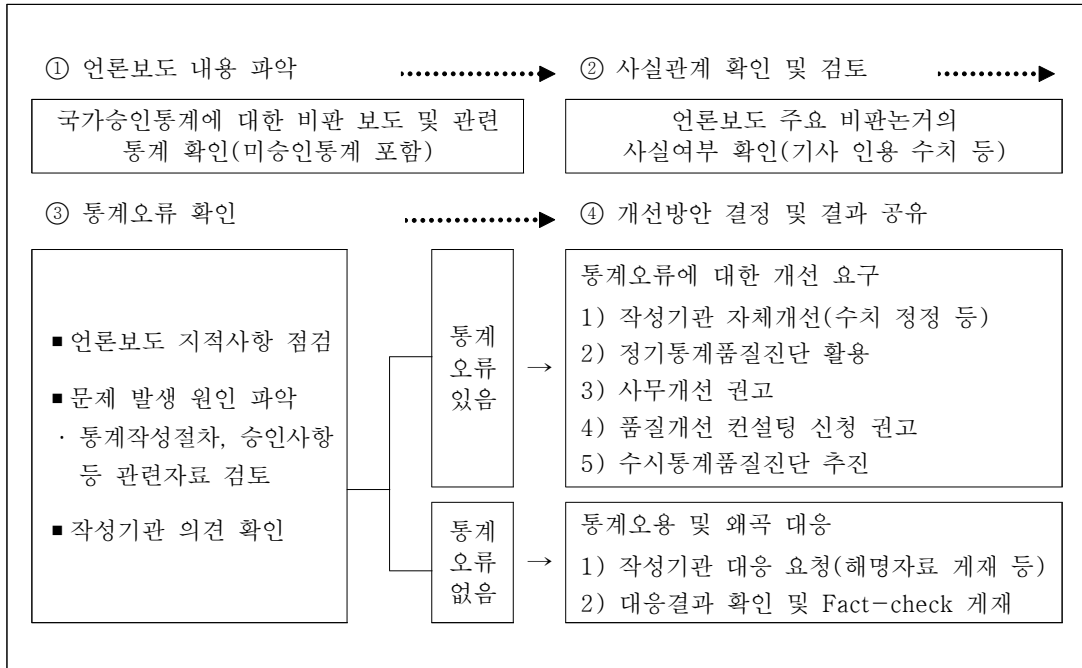
1 국가통계 모니터링 실시

- 중앙통계 행정기관으로서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 기능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, 국가통계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운영을 2010년 본격화하였고, 이를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기획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실시

○ 언론보도 모니터링 체계

- (1) 언론보도 내용 파악 및 관련 통계 확인
- (2) 문제제기 내용에 대한 현황 및 사실관계 파악
- (3) 언론보도 지적사항 점검 및 문제 발생 원인 파악
- (4)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통계 작성기관의 의견 확인
- (5) 최종 결과보고 및 작성기관 환류 실시
 - 통계오류 확인 시 작성기관에 개선 요구
 - 통계오용 및 왜곡에 대하여 작성기관 대응 요청 및 결과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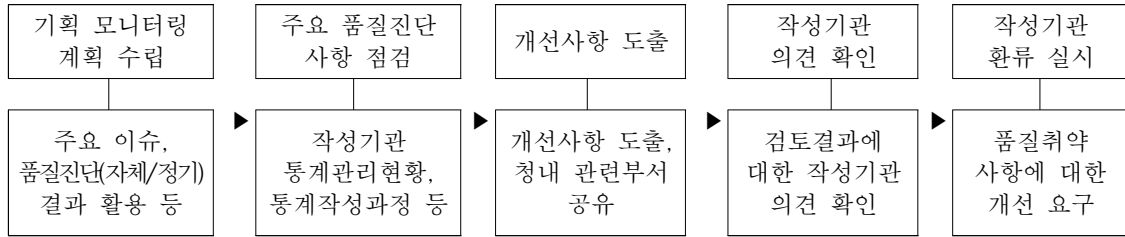
< 언론보도 모니터링 절차 >



○ 기획 모니터링 체계

- (1) 기획 모니터링 주제 선정 및 기획 모니터링 계획 수립
- (2) 작성기관 통계관리현황 등 품질진단 사항 점검
 - 변경승인 이력 및 승인사항 준수 여부 검토(작성목적, 공표 주기 등)
 - 모집단 및 표본설계, 자료수집체계 등 주요 품질진단 사항 검토
 - 사전정보공개 현황, 통계공표 현황 검토(작성기관 홈페이지, KOSIS 등)
 - 간행물 등 통계결과의 오류 및 조사표, 결과표, 조사항목 등 점검
 - 관련 유사통계와의 정합성 점검
- (3)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통계청 관련 부서 공유
- (4)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작성기관의 의견 확인
- (5) 최종 결과보고 및 작성기관 환류 실시
 - 필요 시 작성기관 방문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문제점 추가 파악
 - 품질취약 사항에 대하여 작성기관에 개선 요구
(통계품질 저하 관련 심층진단 필요 시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 검토)

<기획 모니터링 절차>



2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 선정

- 국가통계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취약 사항에 대한 심층진단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통계를 대상으로 「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선정위원회」를 개최하여 진단 실시 여부 결정

<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선정위원회>

운영 목적	진단대상 통계의 내·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한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 및 실효성 제고
주요 안건	수시통계품질진단 검토 통계에 대한 평가 및 대상 선정, 진단 추진방향 및 기타 의견 수립
구성 및 개최	■ 위원회는 위원장, 위원, 간사로 구성되며, 5인 이상 위원 참석 시 개최 - 위원장 : 통계정책국장 - 위 원 : 청내 관련 부서* 담당사무관, 품질관리과장, 외부전문가 - 간 사 : 품질관리과 담당사무관 * 표본과, 통계조정과, 통계기준과, 통계개발원, 청내 유사통계 작성부서

-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선정 평가표*([붙임] 참조)에 대한 평가결과와 진단을 통한 품질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선정

* 조사결과의 정확성 및 통계품질과 관련된 주요 평가항목으로 구성

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 선정기준

- 대상선정위원회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평가표의 2개 이상의 평가항목에 대해 **점검 필요*** 또는 **미흡**으로 평가한 경우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으로 선정

(*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통해 원자료 분석 및 상세자료 검토가 필요가 경우)

- 단,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위원들의 종합 검토 시 수시통계품질진단을 통한 품질개선 가능성 및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가능

3 진단주체 결정

□ 진단주체는 대상통계 특성, 품질취약 분야, 진단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

〈 수시통계품질진단 진단주체 〉

	내부진단	외부진단
통계특성	· 통계청 생산통계와 조사대상, 모집단 등이 유사할 경우	· 조사대상 및 조사범위가 전문 분야에 해당
품질취약 분야	· 품질취약 분야가 표본, 모집단 등으로 표본과 진단 참여가 가능한 경우	· 품질취약 분야가 특수한 분류기준, 조사항목, 자료 추정방법 등에 해당
진단시기	· 외부 진단팀을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(11월, 12월 실시) · 국가통계 모니터링 등으로 대상 통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가 충분하게 도출된 경우	· 외부 진단팀을 구성할 시간이 충분할 경우
예 산	· 예산 편성액이 부족하거나, 예산을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	· 외부진단을 실시할 예산이 있을 경우

1) 내부 진단팀 구성

- 품질관리과 내 수시품질진단팀 및 청내 전문가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, 품질관리과장 주관으로 통계청 내부 진단팀을 구성하여 진단 실시
 - － 내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진단할 경우에도 특정 분야에 한해 외부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자문 병행

〈사례〉 창업기업실태조사(2017년 진단, 중소벤처기업부)

- (주관) 품질관리과
- (통계청 내부) 표본과, 경제총조사과, 행정자료관리과 관련 직원으로 진단팀 구성
 - － 진단분야를 세분화(품질관리과 : 조사방법 및 작성체계, 표본과 : 표본설계 타당성, 행정자료관리과 및 경제총조사과 : 모집단 분야 등)하여 각 부문별 진단 실시

- 1차 진단팀 회의를 통해 담당자별 업무 역할, 진단방향을 설정하고, 총 3~4회 회의 실시
- 품질관리과에서는 검토내용 보고서 양식을 진단팀에게 전달하고, 진단팀은 개선방안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최종 검토결과를 품질관리과로 제출

2) 외부 진단팀 구성

- 해당 통계 분야 및 통계학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관련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진단팀을 구성하여 진단 실시
 -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경우, 관련 통계 품질진단 및 연구 경험이 있는 자로 인력풀*을 구성하고, 그 중 적합자를 선정
- * 작성기관 추천 연구위원, 정기통계품질진단 및 품질개선 컨설팅 연구위원, 표본설계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

<사례>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(2011년 진단, 국민건강보험공단)

- : 의료분야의 통계로 전문성이 요구되어, 의료정책전문가와 통계전문가로 이루어진 외부 진단팀을 구성하여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 실시
- 연구기간은 약 4개월로,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위주로 집약적으로 진단 실시

4 작성기관에 실시계획 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

- 작성기관에 해당 통계에 대한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계획을 알리고 자료 제출 요청
- 제출 요구자료: 조사기획 단계에서 결과 공표 시까지 작성된 모든 자료

제출 요구자료

- 품질관리기반 현황표,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
- 조사기획서, 이용자 및 전문가 명부, 이용자 및 전문가 회의자료, 조사표, 조사지침서(입력 및 내검지침 포함), 조사원 교육일정 및 교육자료, 표본설계내역서, 모집단명부, 표본명부, 집계표 설계서, 표본관리 현황(대체내역 포함), 조사과정자료(파라미터), 내검규칙, 자료처리 내역 및 방법(무응답, 이상치), 마이크로데이터(코드집 및 가중치 포함), 결과보고서
- 기타 ‘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’ 해당 항목 관련 근거자료

[참고] 자료 제출 근거

통계법 제35조(자료제출요구)

- ① 통계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5 진단 실시

1) 내부진단

- 착수회의: 내부자문단 구성, 통계작성 결과 검토 및 의견 수렴, 중점 진단사항 결정 및 각 과별(또는 구성원별) 역할 분담

<사례> 창업기업실태조사(2017년 진단, 중소벤처기업부) 착수회의

- (내부자문단 구성)
: 품질관리과(조사체계 및 통계작성절차) / 표본과(표본설계의 적절성 검토) / 행정자료관리과·경제총조사과(모집단 분야 검토)
- (내부자문단 운영)
: 착수회의 및 최종보고회 등 참석, 해당분야별 진단 실시 및 분야별 진단보고서 제출

- 작성기관 및 위탁기관 방문

- 조사방법/작성체계/현장조사 관리 방법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

<사례> 무역통계및수출입물류통계(2012년 진단, 관세청) 작성기관 방문

- 세관 및 관세사 방문 2회
- 지식경제부와 협의 1회
- 서울 지역 관세사 심층면접 실시 1회

- 표적집단면접(FGI) 실시: 전문이용자들의 통계에 대한 태도, 인식, 의견 등을 수집하여 해당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수집
 - 통계자료 주된 이용 목적 및 빈도, 이용상 문제점 및 개선점, 조사문항의 적절성 및 조사결과의 신뢰성, 유사통계와의 정합성 등을 논의
- 점검회의: 작성기관(조사기관) 방문 결과 및 FGI 결과 검토, 담당 부문별 검토 결과 보고 및 환류, 추가 점검사항 검토, 최종보고서 작성방향 결정 등을 실시하며, 연구기간에 따라 2~3회 실시

<사례> 창업기업실태조사(2017년 진단, 중소벤처기업부) 점검회의

- 모집단 관련 청내 의견수렴(통계데이터기획과, 행정자료관리과 등)
- 통계작성기관(중소기업청) 의견 수렴
- 각 부문별 진단팀 내부진단 결과 검토

2) 외부진단

○ 연구진은 품질관리과에서 제시한 진단 절차 및 일정을 준수하여 진단 실시

(1) 진단체계별 심층진단 실시

-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분석 및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점검 실시
- 작성기관 제출자료 분석을 통한 품질취약 부문 심층진단 실시
- 표적집단면접(FGI) 실시를 통한 이용자 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도출

(2) 결과 보고 및 작성기관 간담회 실시

- 착수보고: 착수보고서 제출, 연구방향 및 진단 수행계획 보고, 의견 수렴
- 중간보고: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, 중간 연구결과 발표 및 의견 수렴
- 작성기관 간담회: 품질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설명, 최종 개선과제 협의
- 최종보고: 문제점 및 개선과제 등을 포함한 최종 진단결과 보고

○ 품질관리과는 추진상황 관리 및 진단방향을 제시하고, 통계작성 현황을 점검

(1) 진단 추진상황 관리

- 착수, 중간, 최종보고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
- 작성기관 방문, FGI 및 간담회 참석을 통해 개선과제 공동 도출 및 작성기관과의 진단결과 조율 실시
- 진단 결과보고서 검토 및 보완, 추가 진단사항 제시 등

(2) 통계작성 현황 점검 및 품질취약 사항 도출

- 과거 품질진단 내용 검토 및 변경승인 이력 확인
-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및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 검토 및 품질취약 사항 도출
- 청내 관련과(표본과, 통계개발원, 경제/사회통계심사조정과 등) 자문 실시

6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

○ 품질진단 결과의 충실성 및 개선과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, 필요 시 내용 보완

○ 보완 요청내용 및 작성기관 간담회 논의내용이 보고서에 반영되었는지 최종 확인

○ 제출된 최종보고서 내부 보고(차장) 및 통계청 홈페이지 게시

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선정 평가표

□ 조사통계

통계작성절차	평가항목	평가결과			
		양호	보완 필요	점검 필요	미흡
통계작성기획	◆ 통계작성 방법의 적절성 - 통계작성 목적에 맞는 작성방법 사용 여부	○	○	○	○
통계설계	◆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의 적절성 - 조사항목 구성 및 배치의 적절성 - 조사항목 및 용어의 명확성, 일관성 - 조사항목에 대한 설명의 충분성	○	○	○	○
	◆ 조사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의 적절성 - 조사모집단의 포괄성 및 대표성 - 조사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활용자료의 명확성 - 조사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구축절차의 적절성	○	○	○	○
	◆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 - 층화기준 및 표본크기 결정의 타당성 - 표본배분 및 표본추출 방법의 적절성 - 모수 및 분산 추정식 제시 여부	○	○	○	○
자료수집	◆ 조사방법 및 표본관리의 적절성 - 조사방법 및 조사관리 과정의 적절성 - 표본대체 기준, 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 - 목표표본수 대비 완료표본수의 적절성	○	○	○	○
통계처리 및 분석	◆ 통계추정 산식 및 가중치 관리의 적절성 - 모수 추정치를 계산하는 산식의 적절성 - 표본가중치 적용 및 관리의 적절성	○	○	○	○
	◆ 무응답 관리 및 처리방법의 적절성 - 응답률 관리 및 산출산식의 적절성 - 무응답(항목, 단위) 처리방법의 적절성	○	○	○	○
통계공표,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	◆ 공표범위의 적절성 - 모집단 분포, 표본설계, 상대표준오차 등 고려	○	○	○	○
■ 종합평가 및 의견					

□ 가공통계

통계작성절차	평가항목	평가결과			
		양호	보완 필요	점검 필요	미흡
통계작성기획	◆ 통계작성 방법의 적절성 - 통계작성 목적에 맞는 작성방법 사용 여부	○	○	○	○
통계설계	◆ 수집자료의 포괄성 및 타당성 - 수집가능 자료에 대한 포괄성 검토의 적절성 - 투입된 개별자료에 대한 통계적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의 적절성	○	○	○	○
	◆ 통계개편의 적절성 - 통계의 변경 또는 개편 필요성 검토의 적절성 - 통계작성 변경내용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	○	○	○	○
자료수집	◆ 자료수집 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 - 자료수집 단계별(기관별) 절차의 명확성 - 투입자료 수집에 관한 매뉴얼 첨부 여부	○	○	○	○
	◆ 수집자료 처리의 적절성 - 수집자료 처리과정 및 자료내검의 적절성 - 내검매뉴얼 첨부 여부	○	○	○	○
통계처리 및 분석	◆ 통계작성 과정 및 결과의 적절성 - 단계별 가공절차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적절성 - 산출된 주요 통계목록 관리의 적절성 - 자료입력 및 처리 시스템 구축 여부 - 최종 산출통계에 대한 검증 여부	○	○	○	○
통계공표,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	◆ 공표범위의 적절성 - 투입된 개별자료의 신뢰성 등 고려	○	○	○	○
☒ 종합평가 및 의견					

□ 보고통계

통계작성절차	평가항목	평가결과			
		양호	보완 필요	점검 필요	미흡
통계작성기획	◆ 통계작성 방법의 적절성 - 통계작성 목적에 맞는 작성방법 사용 여부	○	○	○	○
통계설계	◆ 보고양식 관리의 적절성 - 보고양식의 법적근거 마련 여부 - 보고양식 설계 및 변경 절차의 적절성	○	○	○	○
	◆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의 명확성 -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정의의 명확성 - 통계작성대상 포괄범위의 적절성	○	○	○	○
자료수집	◆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- 자료수집 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 - 자료수집 단계별 전산입력 과정 등의 적절성	○	○	○	○
통계처리 및 분석	◆ 자료입력 및 자료처리의 적절성 - 보고자료의 전산입력 및 자료내검 방법의 적절성 - 산출지표 집계 및 분석 방법의 적절성	○	○	○	○
	◆ 무응답 관리 및 처리방법의 적절성 - 응답률 관리 및 무응답(항목, 단위) 처리방법의 적절성	○	○	○	○
통계공표,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	◆ 공표범위의 적절성 - 활용된 보고자료의 신뢰성 등 고려	○	○	○	○
▣ 종합평가 및 의견					